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2021 - 98 호

한강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

「하천법」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·변경된 한강(팔당댐~하구)에 대해 「하천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코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(안)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 년 8월 10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개 요

하천명	구역번호	위 치	비 고
한강	우028	남양주시 삼패동 376번지 외 33필지	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-100 ~ 102호
	좌036	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5-17 외 13필지	

○ 하천구역 결정(변경) 사유

- 국가하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구역 지정 이의신청에 따라 「하천법」 제10조 제1항 3호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천구역 결정(변경) 및 홍수관리구역을 지정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○ 공람기간 : 2021년 8월 10일 ~ 2021년 8월 23일 (14일간)

○ 공람시간 : 09:00 ~ 18:00

○ 공람장소 : 남양주시청(생태하천과), 김포시청(안전총괄과)

3.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

○ 제출시기 : 공람기간 이내(2021년 8월 23일 18:00 한)

○ 제출장소 : 공람장소와 동일

○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(주민의견서 제출양식)을 이용하여 서면제출

4. 기타 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(☎02-2110-68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